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인불응죄 과태료 전환〉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196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구인불응죄 및 법 원의 면책 불허가 관련 규정	4
3. 검토의견	7
4. 관계기관 의견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과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인불응죄 조항을 삭제하고(안 제653조 삭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0조제4항 신설).

또한, 구인불응죄 조항 삭제에 따라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해당 인용 조문(제653조)을 삭제하고 제5호의2를 신설하여,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564조(면책허가) ①----- ----- -----.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1. ----- 제650조·제651조·제656조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

현행	개정안
6. (생략) ② ~ ④ (생략)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0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신설>	<u>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u>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66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56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구인불응죄 및 법원의 면책 불허가 관련 규정

(1) 구인불응죄 관련 규정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제319조)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제320조)²⁾, 파산선고 전의 채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 등(제322조)³⁾ 및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제578조의6)⁴⁾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2.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3. 수탁자의 지배인

4.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②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53조)⁵⁾.

이와 같이 처벌 규정을 둔 이유는 파산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파산에 관한 사항에 잘 알고 있고, 관련 설명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등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법원의 면책 불허가 관련 규정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제556조 제1항)⁶⁾,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며(제564조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564조제2항)⁷⁾.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 채무자회생법상 법원의 면책불허가 사유 >

제1호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2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제3호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제4호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5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6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이러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해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되,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파산절차상의 의무이행 태만 또는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면책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⁸⁾.

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법문사, 2024. 1493면.

3. 검토의견

정부에서 2023년 10월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⁹⁾에서는 주요 개선사항 중 하나로 사기파산 등 채무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¹⁰⁾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구인 등의 절차에 관한 처벌은 지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행법에 규정된 구인불응죄(제653조)의 형벌 규정은 행정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관련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상 구인불응죄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법원의 구인명령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구인불응죄 위반에 따른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함께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①현행법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에 따르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되, 이러한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인 제도가 있으나 불응시 형사 처벌 규정은 별도로 없는 점,

②구인불응죄는 채권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사기파산죄, 과태

9) 관계부처합동, “경제 형벌규정 제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2023. 10. 12.자 보도자료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이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등

파산죄 등과 다르게 파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침해하는 절차적 파산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 점¹¹⁾,

③1962년 제정된 舊 「파산법」에는 파산자에 대한 구인영장 제도는 있었으나¹²⁾, 구인불응죄 처벌조항은 舊 「파산법」을 폐지하고 2005년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 도입된 규정인 점,

④법무부에 따르면 구인불응죄 관련 규정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①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형벌과는 차이가 있고¹³⁾, 어떠한 행정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유형과 처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

11)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법문사, 2024. 1624면.

12) 舊 「파산법」 제138조 (파산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인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3)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3. 599면.

<과태료와 벌금의 비교>

구분	과태료	벌금
개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행정질서벌)	범죄인에 대한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 (행정형벌)
부과주체	1차: 행정청 2차: 법원(이의제기시)	법원
불복절차	과태료재판 (간이한 비송절차)	형사소송
집행	이의제기할 경우 과태료 재판 확정 후 집행	유죄 확정 후 집행

인바¹⁴⁾,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거나,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형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¹⁵⁾.

또한, ^②현행법상 구인불응죄는 법원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고,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도주하는 행위가 함께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위 태양에 차이가 있고,

위반시 제재에 있어서도 현행법상 구인불응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바,

14) 헌법재판소 1994.4.28. 선고 91헌바14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5)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3. 602면.

< 과태료 처분 대상의 예외 >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 유형에 속하더라도 다음 사항은 형사벌로 처벌하도록 한다.

- ①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이라도 이와 관련성이 깊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질서 위반이 결과적으로 위생과 안전의 확보를 크게 저해하는 사항
- ③ 정부 역점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
- ④ 제도의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신고영업의 경우 영업신고 등)
- ⑤ 그 밖에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형벌로 처벌해야 할 사항 등

파산절차 지연 등의 고의 또는 목적을 가진 채무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만으로 범죄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

구분	구성요건	위반시 제재	
현행법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구인불응죄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형벌규정은 과도한 처벌로 이해되며,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대
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
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법원의 구인 불응에 대한 현행법상의 형
사적 제재조치를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하향 조정인바, 「채무자회생
법」 제658조¹⁶⁾와의 관계, 각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

16)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1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요약(총 46개)

연번	법률명	구성요건	개선방안
1. 생활밀착형 규정(14개 과제)			
1	폐기물관리법 §66-4의4(§18③ 관련)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백만원 (거짓 입력 등은 유지)
2	대기환경보전법 §90-4의3(§39① 관련)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3백만원 (거짓 기록 등은 유지)
3~4	정보통신공사업법 §74-3(§17④·1, 2 관련)	공사업의 양도, 합병에 있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5~6	영화비디오법 §94-2, §95-10 (§29⑤, §62② 관련)	(§94-2)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95-10)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형량조정> (§94-2) 2년 2천만원 (§95-10) 1년 1천만원
7	사회복지사업법 §55(§13② 단서 관련)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기존 행정제재 등 활용> 과태료 3백만원
8	장애인복지법 §87-6(§59②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자	<선행행정제재·후형벌> 사업정지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9~10	항만법 §110-1(§12⑤ 단서, §58⑤ 단서 관련)	준공확인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선행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11~12	옥외광고물법 §18②·1, 2(§3, §3의2 관련)	공공시설물 등에 미신고(변경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광고물을 표시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13~14	하천법 §96-3, §96-8 (§75③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축, 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허가나 타인의 토지출입허가를 받은 자 등	<선행행정제재·후형벌> 원상회복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 행정적 의무 위반 규정(15개 과제)			
15~20	자본시장법 §446-16, §446-54 (§91①, §186②, §113①, §280③, §338, §356 관련)	(§446-16)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 (§446-54)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선행행정제재·후형벌> (제16호)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행정제재 전환> (제54호)과태료 1억원
21~22	자유무역지역법 §61-3, §61-5 (§34①, §35③, §38③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등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천만원
23	마리나항만법 §38-2(§18④ 관련)	준공 전 사용 신고를 하지않고 토지·시설 등을 사용한 자	<선행행정제재·후형벌>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4	항만법 §110-3(§38① 관련)	항만시설소유자로서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점검을 미 실시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5	항만운송사업법 §30-2(§26의3①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26	환경오염피해구제법 §47②·2(§17 관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선행정제재-후형벌> 영업정지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7~28	하천법 §95-1, §95-6 (§14②, §39② 관련)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 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9	물류시설법 §65①·4의2(§21의2① 관련)	물류창고업 등록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천만원

3. 사문화된 규정(10개 과제)

30	교통안전법 §63-4(§43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교통안전진단기관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1~32	뉴스통신법 §35-1, §35-2(§9① 관련)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등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3	불공정무역조사법 §40②·1(§7② 관련)	수출, 수입, 판매, 제조, 반입, 광고 등을 중지하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4~37	수산업협동조합법 §177-1, 12, 14, 16 (§14①단서, §87, §90 관련)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별수협의 구역을 시·군의 행정구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38~39	해수욕장법 §44-3, §45 (§36②, §37② 관련)	(§44-3)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45)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한 자	<형량조정> (§44-3) 1년 1천만원 <선행정제재-후형벌> (§45)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4. 법률 단위 검토과제(7개 과제)

40~42	선원법 §170-3, §170-4 (§55①, ⑤, §62⑤ 관련)	퇴직금을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형량조정>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형량 상향(3년, 3천만원)
43~46	채무자회생법 §653(§319, §320, §322, §578의6 관련)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자료 : 관계부처합동, “경제 형벌규정 제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2023. 10. 12.자 보도자료